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2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보공단 및 심평원 근로자 1인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5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4.
- (3) 회 부 일 : 2024. 10.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보공단 및 심평원 근로자 1인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각각 1인씩 증원하고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u>14명</u>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20조(임원) ① ----- ----- <u>15명</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u>

2. (생략) ⑤ ~ ⑦ (생략)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u>15명</u>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10명</u>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⑤ ~ ⑦ (생략)	<u>사람 1명</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 ① ----- -----<u>16명</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11명</u>----- -----. 1. ~ 3. (현행과 같음) 4. <u>3년 이상 재직한 심사평가원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u>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¹⁾, 제68조²⁾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 1)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이사회는 사업운영계획 등 기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차입금,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이사회는 기관장(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비상임이사는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직역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5명의 상임이사와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됨.³⁾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또한, 현행법 제65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4명의 상임이사와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음.⁴⁾ 비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1명,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됨.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⁵⁾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에서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은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
- 3)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辦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되,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⁶⁾

□ 개정안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이사 도입을 통하여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최대 15명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⁷⁾, 동법 제2조제2항⁸⁾에 따르면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4328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 수 (이사장 포함)는 각각 15명과 16명⁹⁾인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1인 증원할 경우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 수가 각각 16명, 17명이 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579호)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¹⁰⁾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노동이사제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을 통해 이사 수가 늘어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사 수 제한 규정과 상충되게 되는 점, 현행법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직역 단체와 수를 법률로 지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 참여 직역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통솔범위 확대에 따라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사 수가 총 16명 (원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1명)이 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와의 상충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사 수를 15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실제로는 상임이사를 3명만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579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의 이사 수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 간 상충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심평원 이사 정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법률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노동이사 선임에 따라 이사 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법률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됨.

문 의 처
02)6788-5503